- 2020년 순성면 자체종합감사 -

감사 결과 처분 내용

2020. 11.

당 진 시
(감사법무담당관)

Ⅰ. 수범사례

【면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발로 뛰는 행정 추진】

□ 수해피해 농가 복구 지원

○ 때 · 곳 : 2020. 8. 18.(화) / 면 내 딸기농장 2곳

○ 내 용 : 긴 장마와 폭우로 지친 면내 농가를 위해 면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피해 복구 작업 추진





□ 태풍피해 농가 일손돕기

○ 일 정 : 매년 태풍 북상 이후

○ 내 용 : 강한 바람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를 방문하여 낙과 정리 및 피해 복구 추진





□ 매년 취약계층 자원봉사 추진

○ 일　　정 : 매년 연2회(상하반기) 추진

○ 대　　상 : 면내 취약계층 가구(독거노인, 장애 등)

○ 내　　용 : 취약계층 가구 방문하여 청소, 빨래, 가구수리 등









Ⅱ. 감 사 개 요

○ 감사대상 : 순성면

○ 감사기간 : 2020. 9. 21. ~ 9. 25.(5일간)

○ 감사범위 : 2017. 4. 1. ~ 2020. 8. 31.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5인

Ⅲ. 감 사 성 과

○ 행 정 상

(단위 : 건)

계	처 분 지 시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요구	현지처분	
18	4	10	-	4 [시정 4]	

○ 재 정 상

(단위 : 천원/건)

계	추 징	회 수	환 부	기 타
6,040/ 4	6,040/ 4	-	-	*현지처분 포함

Ⅳ.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심의 내용					
		행정상			재정상(천원)		
		시정	주의	권고	환부	추징	회수
계		**8**	**10**			**4** [6,040]	
1	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				
2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				○ [5,577]	
3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및 납세확인 절자 미준수	○				○ [450]	
5	공유재산 관리 소홀**[현지처분]**	○					
4	공유재산 대부수수료 착오 징수 **[현지처분]**	○				○ [9]	
6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				
7	행정복지센터 보안 관리 소홀		○				
8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9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가 산정 부적정		○				
10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					
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미 징수	○				○ [4]	
12	농지전용신고 업무 소홀 **[현지처분]**	○					
13	양수기 관리 업무 소홀 **[현지처분]**	○					
14	근로능력판정 업무 처리 소홀		○				
15	장애정도 재판정 업무 처리 소홀		○				
16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				
17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				
18	공사계약 입찰공고문 작성 소홀		○				

① 기한부 민원 처리 소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같은 법 제20조(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에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처리진행상황 및 회신 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에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민원의 처리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시간” 단위로, 6일 이상인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7조(민원사무심사관)에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사무심사관은 부읍·면장, 사무장으로,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주무담당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사무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같은 규칙 제2조의 “기한부 민원”을 처리하고자 할 때는 그 민원이 회신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기간 내 회신을 독촉하거나, 처리기간 연장 및 민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민원처리 후 전산을 지연 입력한 경우 해당공문의 사유를 달아 수정 입력하는 등 적정한 조치로 민원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 또한,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서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서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8건(2017년 2건, 2018년 8건, 2019년 8건)에 대하여 기한부민원을 지연처리(입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점검과 독촉을 하지 않는 등 기한부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2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의하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같은 법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제4항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법 제48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5]에는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10일 이내인 경우 9,000원(대인은 6,000원, 대물은 3,000원)을, 10일을 초과하여 1일마다 1,800원(대인은 1,200원, 대물은 600원)을 부과하는 등 최고 300,000원(대인은 200,000원, 대물은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순성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의 가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해태가입 시 미 가입 일수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미 가입자에 대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172일(약 6개월)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최고금액인 300,000원을 부과하여 미가입자에 대한 관련법 위반사항을 알리어, 만일에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방지에 노력을 다하여야 함.

○ 그런데, 순성면에서는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순성면 ▽▽▽ *** ☆☆☆ 외 46명에 대하여 2017년 ~ 2020년까지 총 47건에 5,577,600원의 과태료 미 부과 등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부과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를 즉시 부과·징수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을 연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3 등록면허세 부과 소홀 및 납세확인 절차 미준수

○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에 등록면허세의 정의와 부과·납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24조에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 같은 법 제27조～제28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등의 등록당시 가액으로, 세율은 과세물건에 따라 다르나 차량의 등록의 경우 이륜자동차 125cc초과는 건당 1만5천원으로 되어있고, 같은법 제34조～제35조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제1종에서 제5종은 27,000원에서 4,500원까지(읍·면 지역은 군 단위 세율 적용)로 하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 법 제30조에 등록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음.

○ 같은 법 제38조에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하고, 면허의 부여기관은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납부금액·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기재한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 순성면에서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자 3건과 농지전용 및 도로점용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14건 등 순성면 ◎◎◎ *** ○○○ 외 14인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등록면허세 450,000원을 미부과 또는 과다부과하는 등 지방세 과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도로점용허가 등 면허의 부여하는 부서에서는 새로운 면허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하여 면허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면허증서가 발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미부과한 등록면허세는 즉시 부과·징수하고, 관련 법령을 연찬하여 지방세가 누수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업무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4 공유재산 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읍·면·동장이 지정 되어있음.

○ 재산관리관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조례 제8조(실태조사)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조(관리책임)에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소관재산이 실제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함.

○ 또한, 같은 조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어 전산자료 관리 등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할 경우 재산관리관 간 서로 협의하여 이관하고, 총괄재산관리관(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런데도, 순성면은 2017년 ~ 2020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고, 관리대상 재산의 지적공부 등의 확인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와 당초 대부 목적대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사가 완료되면, 현실에 맞게 전산대장 정리 및 관리부서 이관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대장 및 전산자료를 현황에 맞게 즉시 정리하고, 관리전환 대상 재산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이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 앞으로,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연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5 공유재산 대부수수료 착오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및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에 의하여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재산관리관으로 읍·면·동장이 지정되어 있음.

○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에 읍·면·동장은 소관 재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총괄재산관리관(부시장)에게 보고(전산에 입력으로 갈음 가능)하고, 당진시장에 승인을 받아 대부할 수 있으며, 대부할 경우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여 신규 신청의 경우 5,000원, 갱신 또는 기간연장의 경우 3,000원의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

○ 그런데도, 순성면은 2017년~2020년까지 매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와 같이 수수료 징수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착오 징수한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즉시 징수하고,

○ 앞으로, 공유재산 및 제증명 징수 등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수수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신청 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에 있어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및 증명 자료를 명시하고 있는 등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 사무 편람」은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 서류 등에서 대상자 및 항목에 따라 신청서의 서식과 증명자료, 신분 확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로 신분을 확인한 후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 처리하고 위임장(규칙 제9호 서식)의 위임한 사람의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현주소)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신분증(사본 포함) 확인 시 규칙 제9호 서식 뒷면에 신분증(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 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처리(사본은 제출받아 보관)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또한 주민등록표 열람은 신청자가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하고, 신청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기재 내용을 검토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대장(규칙 제13호 서식)에 신청 내용을 기재하고 열람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순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20. 9. 21. ~ 9. 25.) 중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17년 1월부터 ’20년 9월까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42건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교부하면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호 서식 신청서(위임장)에 신분증(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지 않았고, 2018. *. **. 주민등록표 열람 신청 1건을 접수 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주민등록표 열람 대장에 신청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등·초본을 교부 신청 시 날인을 누락하는 등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서류 확인 등 업무 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주민등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⑦ 행정복지센터 보안관리 소홀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 「당진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2조(근무기강의 확립)는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근무 규칙"이라 한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근무규칙" 제6조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본청 외의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기관은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 경비를 실시하는 경우에 정상 근무일의 경우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2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와 일직 근무에 있어서는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규칙"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중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 및 보안상태의 순찰, 점검 업무를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운용하는 경비업체에 위탁한 것임.

○ 순성면에서도 "근무규칙"에 의거 정상 근무일의 경우 2시간의 사무실 대기 근무와 일직 근무일에는 통상적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있으며, 정상(일직)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경계를 설정하여 청사 내외의 방범·방호 조치를 취하고, 이튿날 근무시간 전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20. 9. 21. ~ 9. 25.) 중 당직근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방공무원복무 규정」 및 "근무 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준수, 재택 당직근무자 및 최종 퇴청자가 보안시스템 작동 시켜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퇴청·당직근무를 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를 상당한 시간 보안시스템 작동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등 행정복지센터 보안을 소홀히 하였으며, 그 결과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지각 6회, 경계 미설정 19회 등 총 25회에 걸쳐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⑧ 건설공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5-473호)」 (이하 "업무수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공사감독관은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시공한 상태의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별 시공기준을 확인하고,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검사 시에는 준공된 공사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대로 일치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공사 시공시의 현장 공사감독관이 비치한 제 기록 등을 검토하여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시 공사비의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사감독자는 설계서의 불분명, 오류 등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업무수행지침" 제148조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2018. *. *. ※※건설㈜ 대표 ■■■과 도급액 15,870천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2018. *. *. 준공한 「◓◓◓◓ 마을위험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도면)에 의하면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합판거푸집(55㎡), 콘크리트 타설(20.35㎥) 시공하도록 반영 하였으나, 사진대지 확인한 결과 설계도서와는 다르게 일부 거푸집(44㎡)과 콘크리트(19.8㎥)를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제경비 포함 400,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8. *. **. ※※건설㈜ 대표 ◎◎◎과 도급액 18,149천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2018. *. **. 준공한 「순성면 ◴◴◴◴ 마을안길 사면보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도면)에 의하면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합판거푸집(30.6㎡), 콘크리트 타설(11.25㎥) 시공하도록 반영 하였으나, 사진대지 확인한 결과 설계도서와는 다르게 일부 거푸집(23㎡)과 콘크리트(10.12㎥)를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여 제경비 포함 336,000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018. **. *. ◖◖ 건설㈜ 대표 ◍◍◍과 도급액 10,336천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2018. **. **. 준공한 「◥◥◥ 마을안길 위험도로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수량산출서, 도면)에 의하면 기초콘크리트 타설시 합판거푸집(42㎡), 콘크리트 타설(18.40㎥) 시공하도록 반영 하였으나, 설계도서(내역서)에 거푸집(19㎡)과 콘크리트(7.04㎥)를 실제 물량과 상이하게 반영, 준공처리하여 제경비 포함 1,305,000원을 과소하게 지출하는 등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⑨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대가산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표준시장단가 등으로 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에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 용역비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 제1항부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의 용역을 추진할 경우 발주처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용역비 산출 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 ◈◈◈◈◈ 위험도로 정비공사 구조설계용역」에 대하여 대가산출 근거가 있음에도 설계사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용역을 발주하고 보험 또는 공제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 「순성면 ■■■■개선사업 설계용역」은 용역설계서에 보험 또는 공제비를 용역비용에 계상하지 않고 발주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⑩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의 점용 허가[1]"를 득 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토록 되어 있고,

○ 부과 시기는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점용허가를 하는 때 또는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나, 순성면에서는 2017년 7월, 2018년 5월, 2019년 7월에 정기분을 부과하는 등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부과하지 않은 도로점용료를 즉시 부과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1) 도로의 점용 허가 :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간의 연장,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도 같다.)

⑪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수수료 미 징수

○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제1호(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의 수수료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원부를 작성 · 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 시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미 징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수수료 4,000원을 즉시 추징하고, 앞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12 농지전용신고 업무 소홀

○ 농지전용신고는 당진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이며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지전용신고 처리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이 가능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을 접수 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순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20. 9. 21. ~ 25.) 중 농지전용신고 업무 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업무 처리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불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에게 제출받아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불필요한 서류는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13 양수기 관리 업무 소홀

○ 당진시 양수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양수기는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팀장 또는 사무장이 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현황판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연2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순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2020. 9. 21. ~ 25.) 중 양수기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 양수장비 보유 현황에 대한 보고 자료는 32대로 보고하고 관리되고 있으나 관리 현황판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며 내부 관리대장에는 8대만 관리하고 있는 등 양수기 관리 업무에 소홀함.

【 처 분 요 구 】

양수기 관리에 대한 현황판을 비치하고 관리대장을 재정비 하는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⑭ 근로능력판정 업무 처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 안내』에 의거 읍·면·동에서는 근로능력평가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게 해당 구비서류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근로능력판정 유효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사회복지과에서 통보가 왔음에도, 2019. 06월부터 2019. 12월까지 대상자 5명에 대해서 공문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2명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어 근로능력판정을 받는 등 국민기초수급자의 자격변동 및 급여 지급과 직결되는 근로능력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⑮ 장애정도 재판정 업무 처리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3,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향후 치료 등으로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판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을 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장애진단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장애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2018.7월부터 2019.8월까지 OOO 외 4건에 대하여 재판정 절차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기준일로 3개월 전에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통지하지 않았으며, 재진단 기한이 지나서도 등록장애인 취소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장애정도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⑯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자(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반기별로 급여관리 점검을 해야 함.

○ 그러나 순성면에서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민기초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 중 급여관리를 필요로 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OOO 외 4명에 대해서 급여지출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에서 누락시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⑰ 건설공사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산정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제6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의 가.에서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순성면에 대한 자체감사 기간 중(2020. 9. 21 ~ 25)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9. 7. 1. ~ 2020. 6. 30.까지 2019년 ◉◉◉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공사 등 12건, 2020년 目目目 용배수로 마무리 정비공사 등 26건에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계약서상 준공일자로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

⑱ 공사계약 입찰공고문 작성 소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6조에서는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순성면에서는 2020년 ◔◔◔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을 작성하면서 개정되기 전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도록 명시하여, 공고문을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람.